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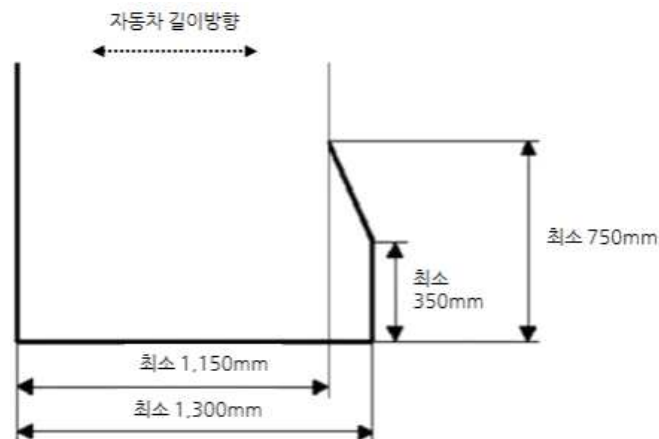
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<신설 2024. 1. 19.>

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·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(제4조의4 관련)

1. 휠체어 탑승공간

가. 휠체어가 버스 측면과 평행하고, 버스 내에서 앞보기로 착석할 수 있어야 한다.

나. 바닥은 [그림 1]과 같이 최소 750mm×1,300mm 면적을 가지는 수평면($\pm 4.5^\circ$)이어야 한다.



[그림 1] 휠체어 탑승공간 측면도

다. 탑승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.

라. 탑승공간 내에는 휠체어 고정장치,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등 휠체어 탑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.

2.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구

높이 1,400mm, 폭 900mm 이상이어야 한다.

3. 휠체어 고정장치

가. KS P ISO 10542-1 표준을 만족하는 4점식 스트랩식 고정장치를 사용해야 한다.

나. 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.

다. 휠체어 고정장치는 휠체어에 설치하였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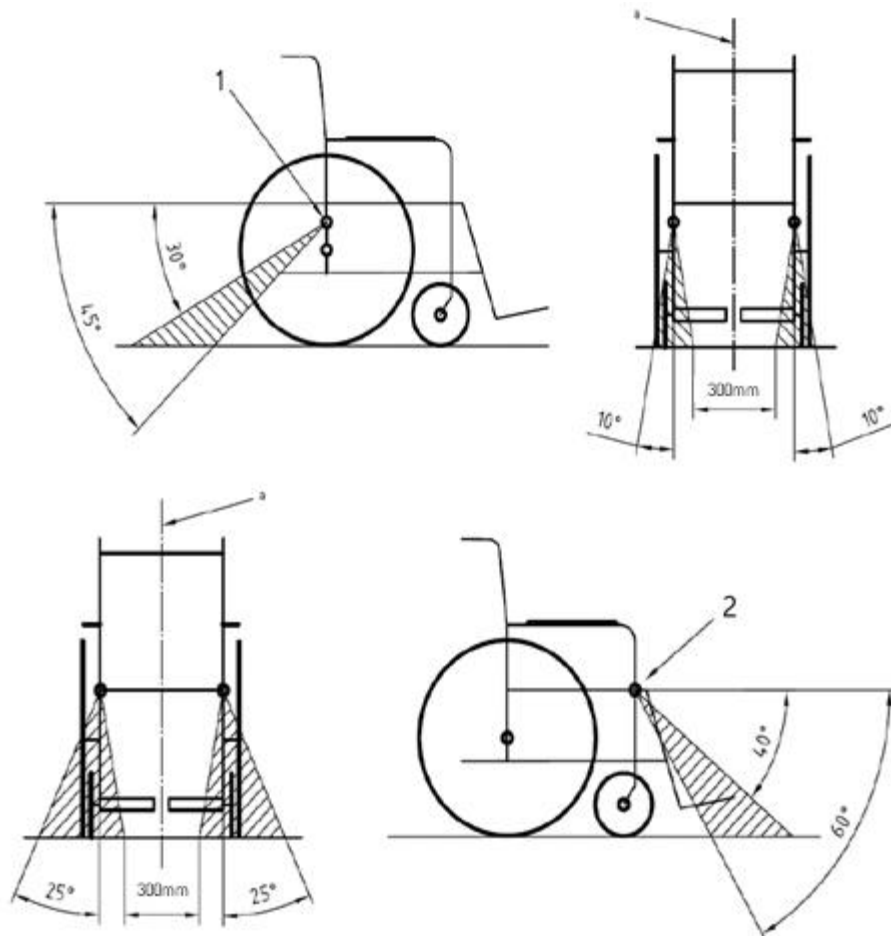
1) 휠체어 고정장치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설치위치

2) [그림 2]와 같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설치위치

가) 후방 고정 스트랩의 측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고, 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$30^\circ \sim 45^\circ$ 이내이어야 한다.

나) 전방 고정 스트랩의 측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

- 고, 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$40^{\circ} \sim 60^{\circ}$ 이내이어야 한다.
- 다) 후방 고정 스트랩의 후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기준면과 평행하고, 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10° 이내이어야 한다.
- 라) 전방 고정 스트랩의 전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기준면과 평행하고, 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25° 안에 있어야 한다.



[그림 2]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범위(KS P ISO 10542-1)

4.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 및 부착장치

가.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는 KS P ISO 10542-1 표준을 만족하는 2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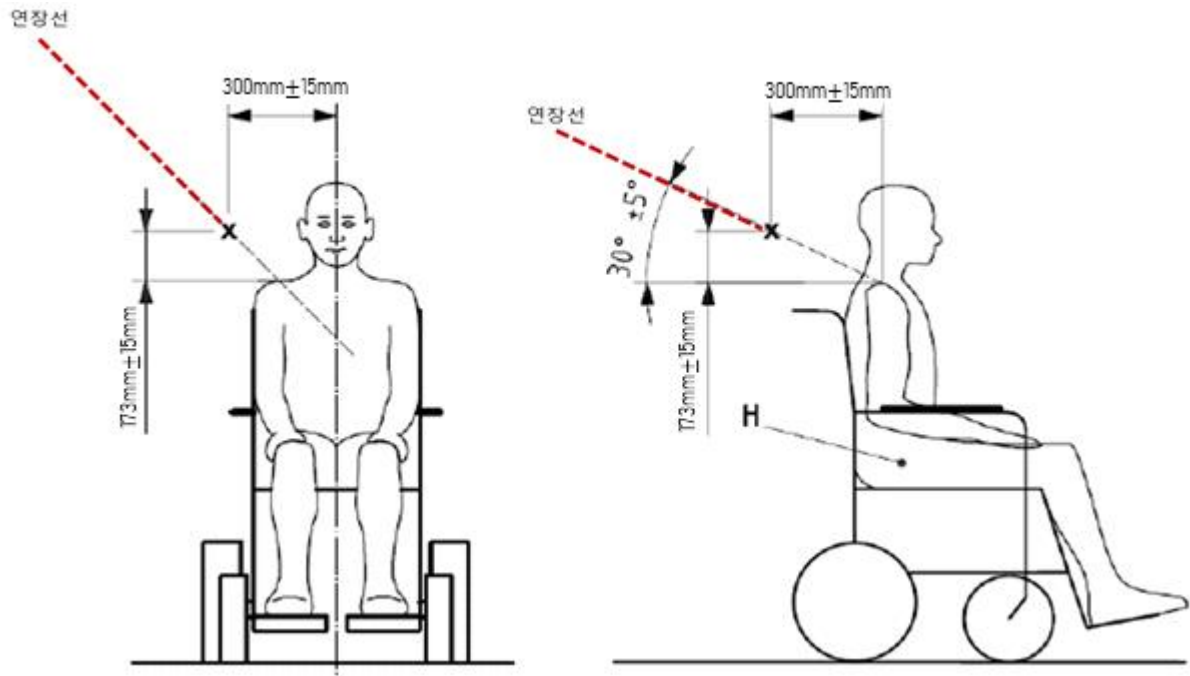
나.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의 부착장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.

- 1)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설치위치
- 2)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설치위치

가) 골반 구속장치 부착장치의 위치는 휠체어에 착석한 인체모형이 착용했을 때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고, 착석기준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의 수평방향 하단으로 $30^{\circ} \sim 75^{\circ}$ 이내이어야 한다.

나) 어깨 구속장치 부착장치의 위치는 [그림 3]과 같이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에서 1,100mm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, 휠체어에 착석한 인체모형의 어깨보다

300mm±15mm만큼 뒤, 173mm±15mm만큼 위에 있으며, 부착장치와 인체모형의 어깨는 30°±5°의 측면투영각을 가지고, 인체모형 중심선에서 300mm±15mm만큼 측방에 있어야 한다. 다만, 차량의 구조상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체모형의 어깨와 어깨 구속장치 부착장치의 연장선상에 설치할 수 있다.



[그림 3] 휠체어 탑승객 구속장치 설치범위(KS P ISO 10542-1)

5. 휠체어 승강장치

가. 휠체어 승강장치 바닥면의 크기는 길이 1,200mm, 폭 800mm 이상이어야 한다.

나. 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각 및 청각 경고장치, 구름방지장치 및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.

다. 조종장치 및 사용자 설명서를 승강장치 주위에 설치해야 한다.

라. 휠체어 전동 승강장치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전원장치를 운전석 주위에 설치해야 한다.

마. 조종장치의 조작을 중단하면 즉시 작동을 멈추고 어느 방향으로도 다시 작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.